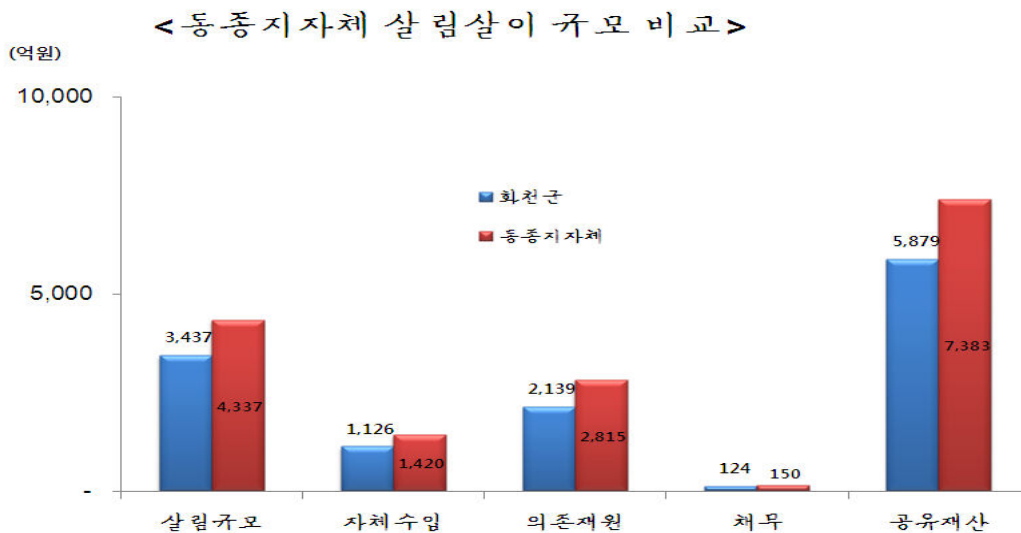


2013년 화천군 지방재정공시

화천군 재정공시 제1호(2013. 8. 30)

화천군수 (인)

- ◆ 우리 군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437억원으로, 전년대비 2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26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2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139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없습니다.
-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125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499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2년도에 토지, 건물등(82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건물(14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87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을 15개 군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338억원) 보다 90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420억원)보다 294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815억원)보다 676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50억원)보다 26억원 적으며, 시(도)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73천원)보다 226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7382억원)과 비교하여 1,503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군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01%이며(전국 평균 5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68%(전국 평균 77.5%)입니다.

◆ 우리 군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하면 재정규모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지원 재원(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 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 행정8급 고우영

전화번호 : 033)440-2242

이메일 : scv456@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화천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343,675	321,125	22,523	433,738	396,738	37,001
	세 출	273,803	235,900	37,903	331,842	312,050	19,791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12.01	12.95	△ 34	17.28	18.19	△ 31
	재 정 자 주 도	70.68	69.56	1.12	63.58	63.3	0.28
	재 정 력 지 수	15.68	16.16	△ 48	21.36	22.56	△ 2
	통 합 재 정 수 지	-683	854	△ 37	3,720	2,724	996
③ 채무/부채	지 자 체 채 무	12,429	13,201	△ 1	15,014	18,959	△ 346
	지 자 체 부 채	15,846	17,557	△ 11	31,596	33,350	△ 754
	민자사업재정부담액				861	714	148
	일 시 차 입 금						
	보 증 채 무				1025	792	233
	지방공기업 부채				4578	3592	986
④ 채권	채 권 현 재 액	3,943	5,860	△ 317	6,882	7,175	△ 3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1,124	1,076	48	2,411	2,376	36
	청 사 관 리 운 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29,099	27,497	1,603	37,030	34,910	2,120
	업 무 추 진 비	264	214	51	385	351	6
	국 외 여 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 회 경 비	336	322	14	400	402	△
	의 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402	404	△	760	726	34
	연 말 지 출 비 율	22,851	13,673	9,178	15,827	15,581	247
	지방세·세외수입 채 납 액	2,053	1,828	224	5,497	5,382	115

재정운영 결과		화천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 회 복 지 비	23,187	23,704	△ 7	45,771	44,516	1,255	
	민간단체 보조금	9,176	8,368	807	8,751	8,513	238	
	행 사 축 제 경 비	5,470	5,056	684	3,227	2,880	347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 금 현 재 액	17,366	17,191	175	10,945	10,478	467	
	공유재산 현재액	587,911	520,321	67,590	738,297	670,204	68,093	
	물 품 현 재 액	5,363	3,520	1,843	5,310	5,879	△ 9	
	출자출연금 집행액	125	182	△	1,940	1,800	139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 무 보 고 서	자 산 총 계	1,994,110	1,861,483	132,627	1,724,434	1,635,610	88,824
		부 채 총 계	15,846	17,557	△ 711	31,596	33,350	△ 54
		수 익 총 계	235,798	218,663	17,135	321,825	292,877	28,947
		비 용 총 계	151,683	146,153	5,530	229,138	214,010	15,128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예산	2,619	2,733	△114	4,588	4,447	142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 가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채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 동종단체 평균액은 자치단체 자료입력 완료 후 자료 별도 전송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화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화천군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3,675	273,941		50,428	19,306

-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지난 5년간 우리 화천군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294,797억원에서 2012년 343,67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94,797	336,163	331,972	321,152	343,675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30,590	100	269,085	100	266,380	100	262,005	100	273,941	100
지방세	7,287	3.16	7,743	2.88	7,623	2.86	7,782	2.97	8,200	2.99
세외수입	56,368	24.45	86,773	32.25	86,631	32.52	73,628	28.1	76,310	27.86
지방교부세	119,737	51.93	101,576	37.75	114,146	42.85	114,846	43.83	124,911	45.6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934	0.84	3,742	1.39	2,653	1.00	2,854	1.09	2,964	1.08
보조금	45,264	19.63	61,451	22.84	55,328	20.77	62,897	24.01	61,555	22.47
지방채·예치금회수	0	0	7,800	2.9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세입원중 지방교부세 및 국비등 보조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비율을 차지하며 재정자립도와 관련있는 세외수입등의 세입원 발굴이 필요함.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7,287,135	7,743,284	7,622,755	7,781,663	8,200,302
인구수	24,110	24,216	24,364	24,945	25,02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02	320	313	312	328

▶ 인구수는 2012.12.31기준 (별첨)

2-2. 세출결산

- 1년 동안 우리 화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73,803	227,433		27,367	19,004

-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지난 5년간 우리 화천군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199,488억원에서 2012년 273,80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9,488	251,858	246,320	235,900	273,803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 2008년대비 2012년도는 37%가 세출규모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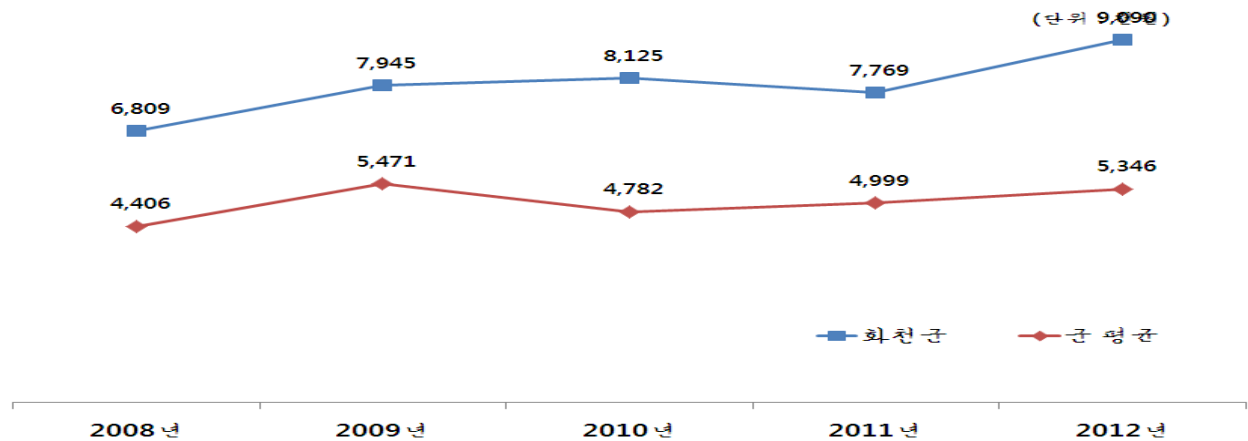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회계별	164,156	비중	192,404	비중	197,968	비중	193,796	비중	227,433	비중
합 계		164,156	100%	192,404	100%	197,968	100%	193,796	100%	227,433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8,664	5.28%	9,088	4.72%	10,143	5.12%	10,098	5.21%	10,546	4.64%
	공공질서·안전	2,646	1.61%	809	0.42%	1,196	0.60%	1,931	1.00%	1,946	0.86%
	교육	3,831	2.33%	4,145	2.15%	2,495	1.26%	1,959	1.01%	3,349	1.47%
	문화 및 관광	18,334	11.17%	24,607	12.79%	36,742	18.56%	24,156	12.46%	32,465	14.27%
	환경보호	5,365	3.27%	9,734	5.06%	10,044	5.07%	12,662	6.53%	10,957	4.82%
	사회복지	23,264	14.17%	26,509	13.78%	23,662	11.95%	23,704	12.23%	23,187	10.20%
	보건	2,111	1.29%	2,207	1.15%	7,115	3.59%	5,040	2.60%	2,924	1.29%
	농림해양수산	33,155	20.20%	40,253	20.92%	37,507	18.95%	38,550	19.89%	48,371	21.27%
	산업·중소기업	3,089	1.88%	7,244	3.76%	4,249	2.15%	1,990	1.03%	3,323	1.46%
	수송 및 교통	8,905	5.42%	9,362	4.87%	11,762	5.94%	10,834	5.59%	16,295	7.16%
	국토·지역개발	28,460	17.34%	31,778	16.52%	26,169	13.22%	34,087	17.59%	43,589	19.1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타	26,333	16.04%	26,670	13.86%	26,884	13.58%	28,786	14.85%	30,481	13.40%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64,156,237	192,403,887	197,968,127	193,795,802	227,432,795
인구수	24,110	24,216	24,364	24,945	25,020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6,809	7,945	8,125	7,769	9,090

(단위 : 천원)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47,007	244,944	253,713	270,080	276,568	1,292,312	2.90%
자 체 수 입	35,259	33,652	35,084	38,500	37,394	179,889	1.50%
의 존 수 입	211,748	210,292	218,629	231,580	239,174	1,111,423	3.10%
지 방 채	0	1,000	0	0	0	1,000	0.00%
② 세 출	247,007	244,944	253,713	270,080	276,568	1,292,312	2.90%
경 상 지 출	43,581	45,392	46,919	49,224	50,798	235,914	3.90%
사 업 수 요	203,426	199,552	206,794	220,857	225,770	1,056,399	2.6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1))}-1] * 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 $[(100.5 / 79.5) ^ (1/4) -1] * 100 = 6.04\%$ (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12.01	215,301	25,849	189,452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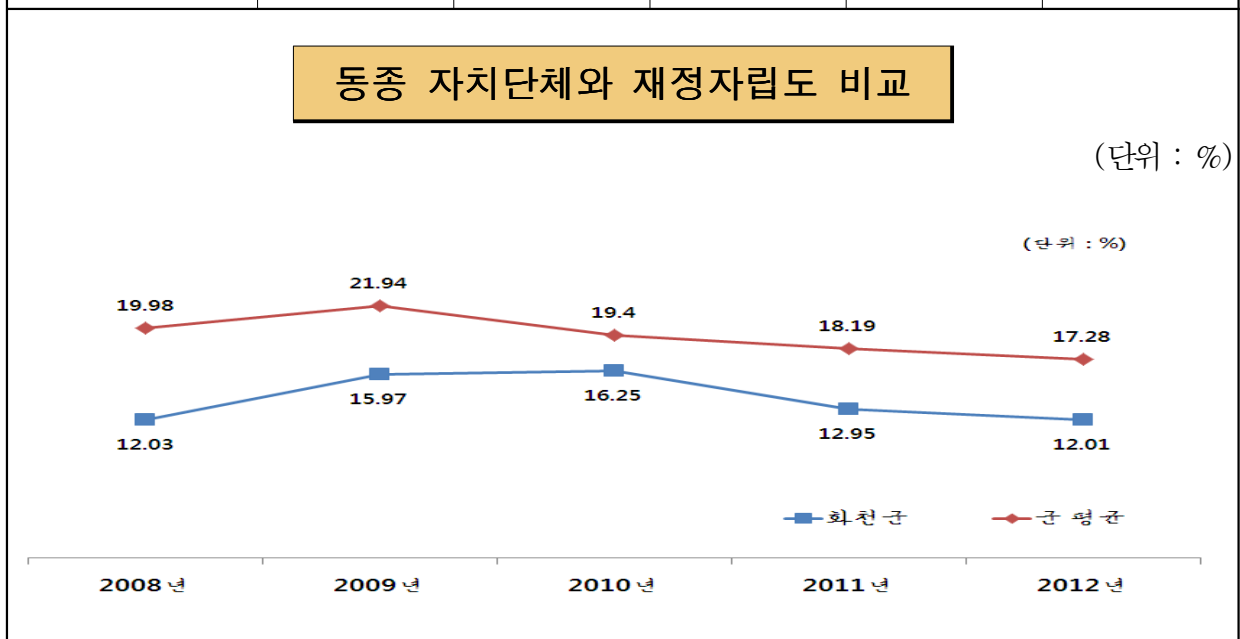
☞ 화천군의 재정자립도는 동종자치단체 및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기업, 공장등 자체세입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12.03	15.97	16.25	12.95	12.0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화천군의 재정자주도는 70.6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70.68	215,301	152,183	63,118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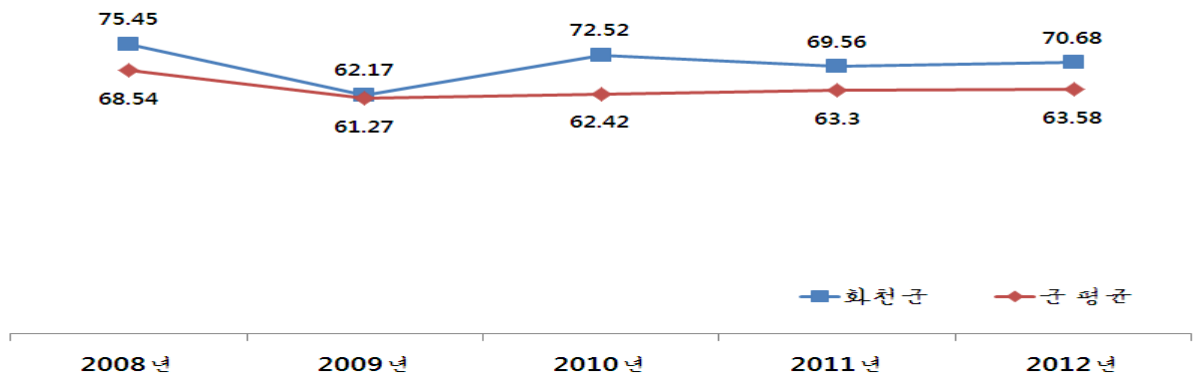
☞ 우리군에서 세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영향으로 재정자주도는 비교적 전국평균에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75.45	62.17	72.52	69.56	70.6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3-3. 재정력지수

☐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 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화천군의 재정력지수는 15.6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5.68	1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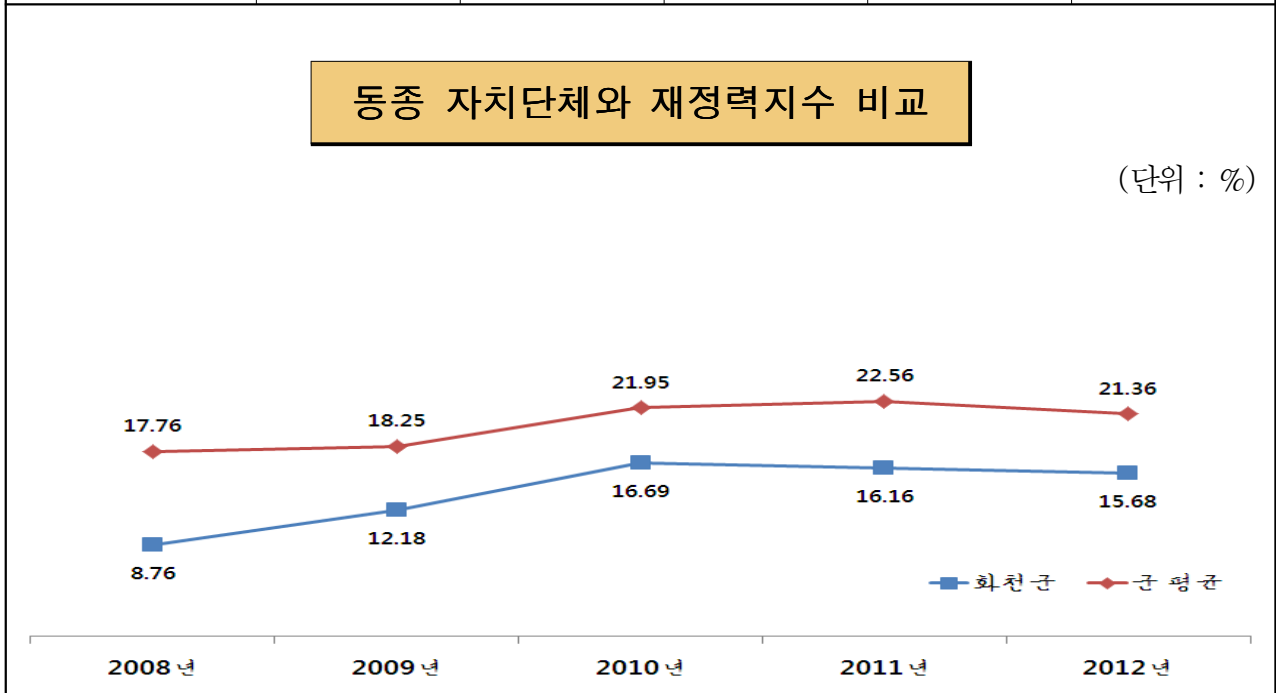
▶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8.76	12.18	16.69	16.16	15.6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3-4. 통합재정수지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화천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438 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포함 6억원 적자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31,777	243,580	340	515	175	11,295	243,755	-11,978	-682
일반회계	204,116	207,816	120	0	-120	9,870	207,696	-3,579	6,290
기타 특별회계	26,930	32,452	220	473	253	1,425	32,705	-5,775	-4,350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730	3,311	0	42	42	0	3,353	-2,623	-2,623

-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규모는 2,438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포함 6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10,157	-29,036	-17,563	-15,262	-11,978
통합재정수지 2	3,158	-5,217	1,809	853	-682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화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201	760		760	12,429		
일 반 회 계	9,700	-350		350	9,350		
특 별 회 계	소 계	3,501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2,510	-410		410	2,100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991	-11		11	979	
기 금 회 계							

-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12년도말 현재액은 124억이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발행등 3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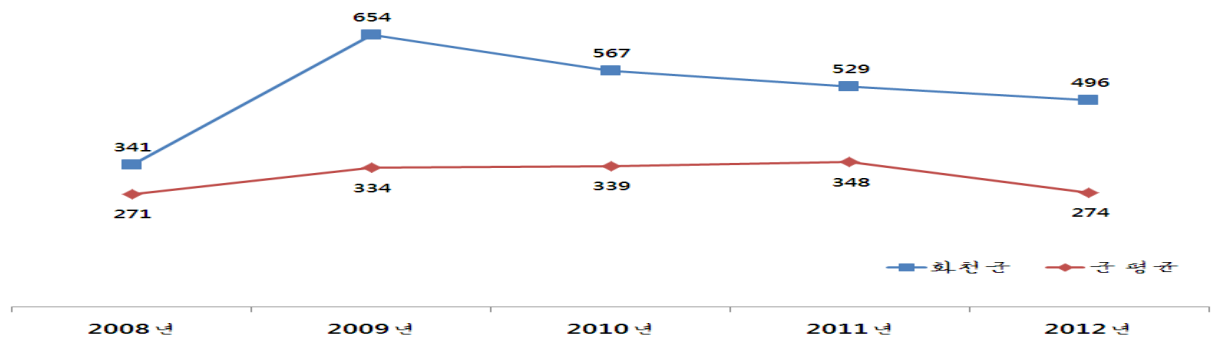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8,223	15,860	13,817	13,201	12,429
인구수(명)	24,110	24,216	24,364	24,945	25,020
주민1인당채무(천원)	341	654	567	529	496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09년도에 78억의 교부세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등으로 지방채무액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8,600	10,400	11,800	11,900	11,400
발행액(B)	0	7,800	0	0	0
발행비율(B/A*100)	0	75	0	0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15,846	17,557	-1,711	
자산(B)	199,4110	1,861,483	132,627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79	0.94	-0.15	

-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 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BTL 임대료				
BTO 운영비				

▶ 2012, 201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 사업							
	◇◇◇ 사업							
	:							
BTO 사업	◇◇◇ 사업							
	◇◇◇ 사업							
	:							

☞ 사업별로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내용을 설명

4-4.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 ☞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을 설명

4-5. 보증채무 현황

-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화천군이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 '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 연도별 증감내역 설명

❖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2							
·							
·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

4-6. 지방공기업 부채

☐ 우리 화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계							
직영 기업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						
공사 공단	소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						

▶ '12년, '1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5 채권

5-1. 채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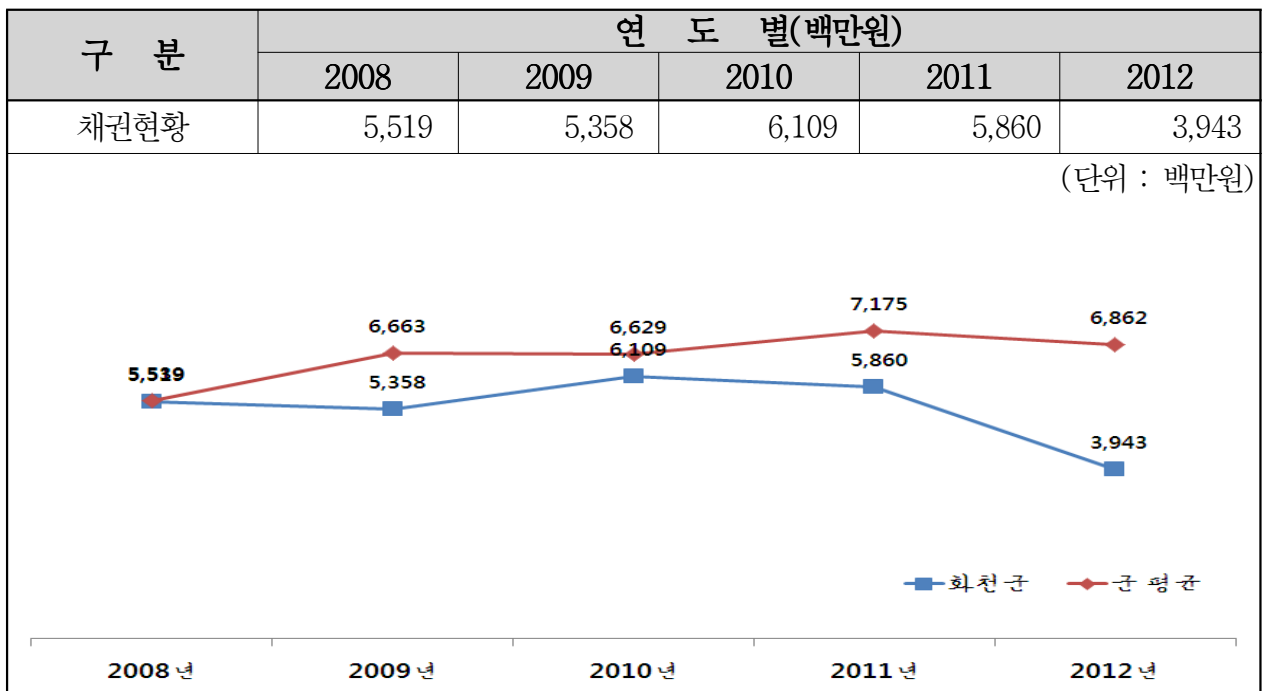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950	-2,007	456	2,463	3,943	
일 반 회 계	3810	-1643		1643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13	-2	5	6	11
	새마을소득특별회계	716	-138	190	328	579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814	-78	109	187	736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315	-44	75	119	2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2	-102	77	179	180

- '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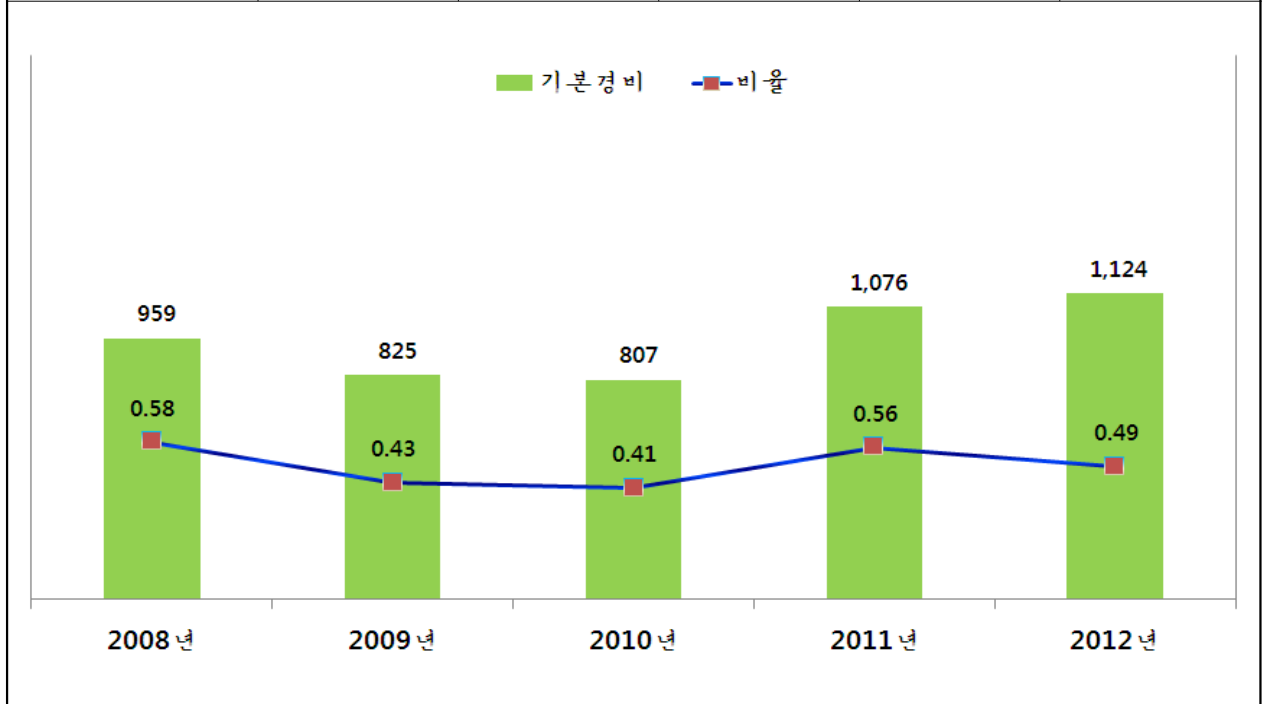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2,743	1,124	0.49%	
일반운영비	22,743	591	0.26%	
여 비		244	0.10%	
업무추진비		190	0.08%	
직무수행경비		60	0.03%	
자산취득비		39	0.0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정월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64,156	192,404	197,968	193,796	227,433
기본경비	959	825	807	1,076	1,124
비율 (%)	0.58%	0.43%	0.41%	0.56%	0.49%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화천군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72m²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에 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 : m², 백만원)

화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m ²)	화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m ²)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m ²)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123m ²	3,395m ²	-272m ²	0

-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시 사유 설명

6-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화천군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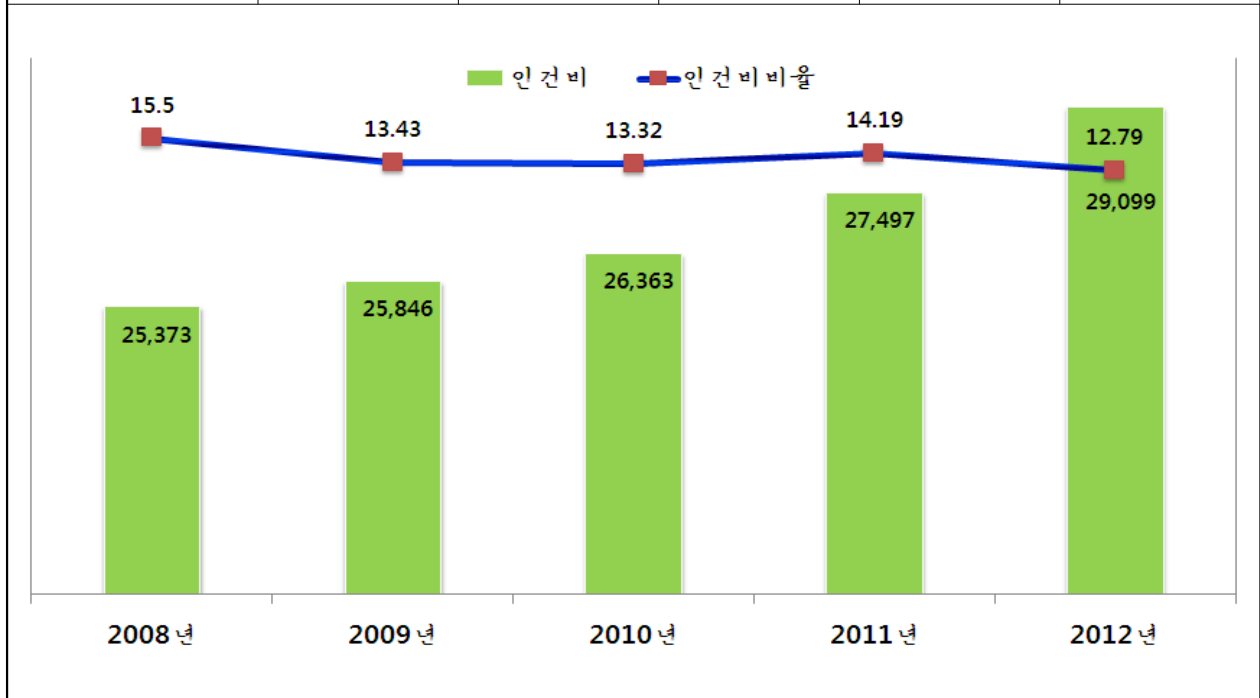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27,433	29,099	12.79%	
인건비(101)		23,563	10.36%	
직무수행경비(204)		747	0.33%	
포상금(303)		1,198	0.53%	
연금부담금 등(304)		3,592	1.58%	

-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 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164,156	192,404	197,968	193,796	227,433
인건비(B)	25,373	25,846	26,363	27,497	29,099
인건비비율(B/A)	15.50%	13.43%	13.32%	14.19%	12.79%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화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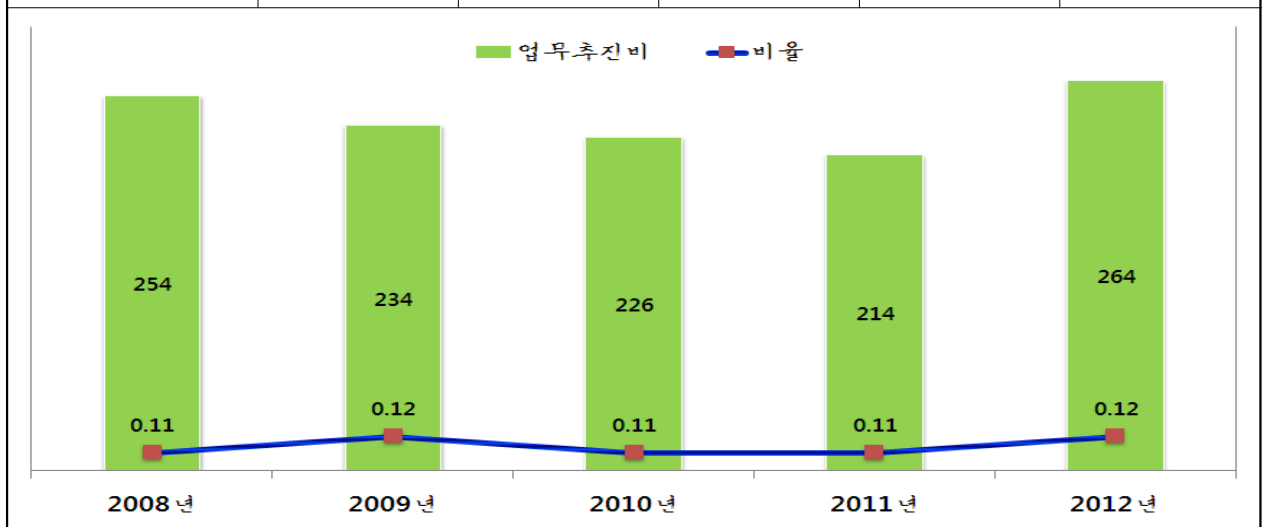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27,433	264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27,433	90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4	0.08%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64,156	192,404	197,968	193,796	227,433
업무추진비	254	234	226	214	264
비율 (%)	0.11%	0.12%	0.11%	0.11%	0.12%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참고)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 1~2. 7	산천어축제 및 사계투어 홍보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2	6
8. 22~8. 24	산천어축제 및 사계투어 홍보	싱가포르	2	3
8. 22~8. 27	산천어축제 및 사계투어 홍보	싱가포르	1	2
9. 6~9. 10	산천어축제 및 사계투어 홍보	말레이시아	2	4
01.14~01.25	스위스 그린델발트 MOU 체결에 따른 세계 눈축제 눈조각 한국 대표 출전 인솔	스위스	1	2
01.30~02.07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는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 방문	에티오피아	1	2
03.13~03.15	용선제작협약 및 용선운영부분 견학	중국	1	0.7
03.21~03.26	해외 민원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3	7
04.22~04.27	모범이장 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2	4
04.18~04.27	선진외국의 우수한 교섭제도 및 협력적 노사문화 벤치마킹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1	4
04.30~05.04	산림탄소순환마을 실제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1	1
05.21~05.25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중국	1	1
07.18~07.26	강원도민회 주최 저소득아동 초청행사 대상자 인솔	미국	1	2
05.28~06.02	모범부서관 해외연수자 인솔	중국	1	2
06.05~06.08	강원한우 하이록클러스터 육성사업 선진지 견학	일본	1	1
06.24~07.02	자활복지관계자 해외선진지 견학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1	3
06.28~07.09	서울대학교(차세대글로벌과정)연수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1	5
08.27~08.31	농기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	1
09.03~09.13	제9기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1	5
09.03~09.13	제9기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미국	1	5
08.29~09.03	태국 국제관광박람회 부스운영 및 MOU여행사 방문	태국	1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9.08~09.14	미국 동부 식물원 벤치마킹	미국	2	10
09.06~09.10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 부스운영 및 MOU여행사 방문	말레이시아	2	2
09.09~10.06	글로벌리더과정(중국어반) 어학연수	중국	1	1
09.09~09.15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 연수	중국	1	1
10.20~10.28	비목콩클립상자 마스터클래스 과정참가	오스트리아	2	8
10.24~10.28	이재민 구호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연수	일본	1	2
10.24~10.28	이재민 구호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연수	미국	1	4
10.17~10.19	2013 산천어축제 및 사계상품 협의관련 MOU여행사 방문	대만	3	3
11.05~11.09	2013 산천어축제 및 사계상품 협의관련 MOU여행사 방문	중국	4(단체장 포함)	6
11.04~11.11	선진국 보건기관 건강증진사업 운영체계 벤치마킹	영국, 네덜란드	1	3
11.05~11.09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7	22
11.03~11.13	중국우산시↔화천군 문화·체육 교류협의 및 전지훈련 협의	중국		2
11.04~11.09	간동면과 루왕프라빙시 간의 상호협력MOU체결	라오스	2	3
11.12~11.19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싱가포르	11	19
11.28~12.05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 목구조 시설지원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	캐나다, 노르웨이	1	6
12.21~12.30	효과적인 도시관리 및 경관형성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1	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총 출장인원에는 단체장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우리군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2,743	336	0.15	7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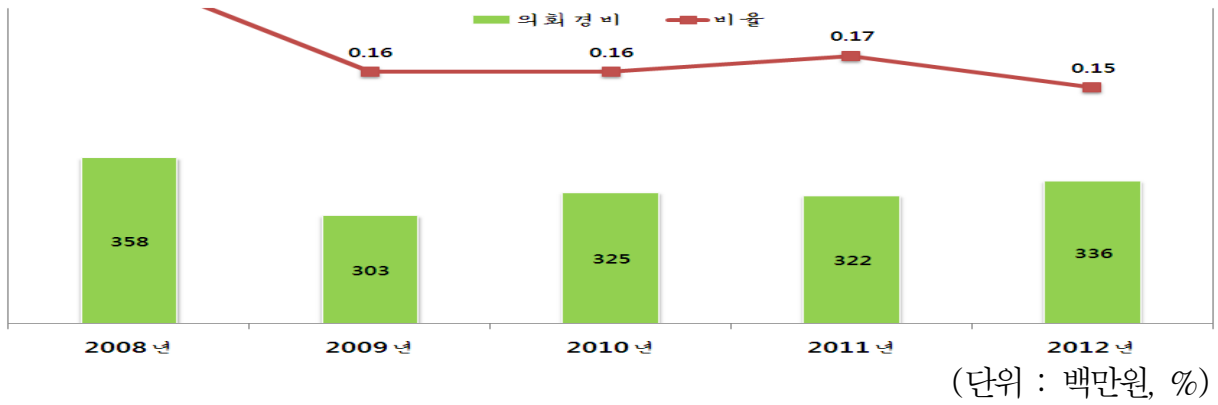
-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원 정원 : 7명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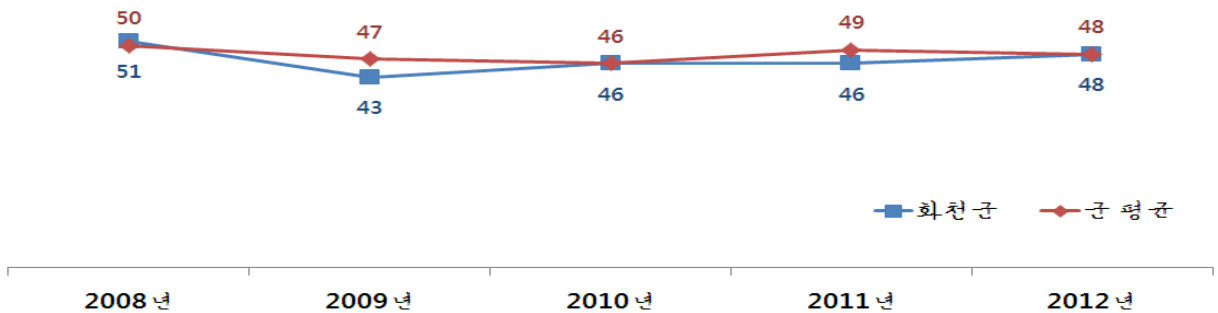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65,156	192,404	197,968	193,796	227,433
의회경비	358	303	325	322	336
의원 정수(명)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2%	0.16%	0.16%	0.17%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	43	46	46	4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	7	2

-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31~2/8 (8박9일)	친환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 견학으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적극 활용	인도	8(의원4)	14

- ▶ 201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화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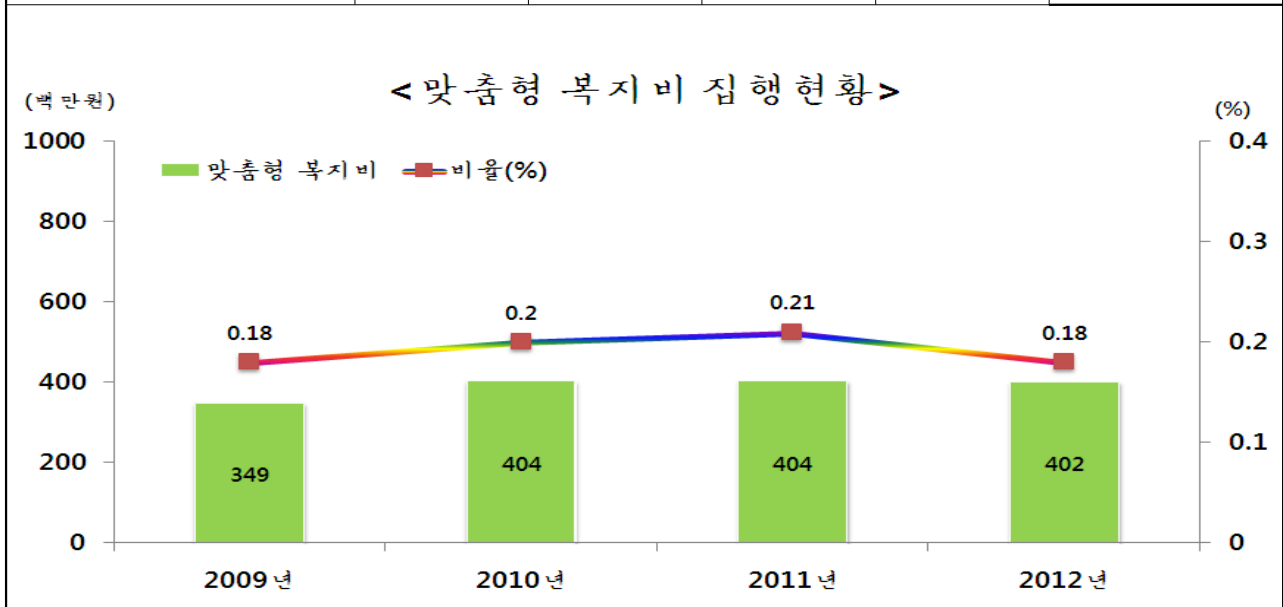
대상인원 (A)	세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59	227433	402	0.18	71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560	565	554	559	
세출결산액 (B)	192,404	197,968	193,796	227,433	
맞춤형 복지비 (C)	349	404	404	402	
비율 (%) (C/B)	0.18	0.2	0.21	0.18	
1인당 평균배정액 (C/A)	0.6	0.7	0.7	0.7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6-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화천군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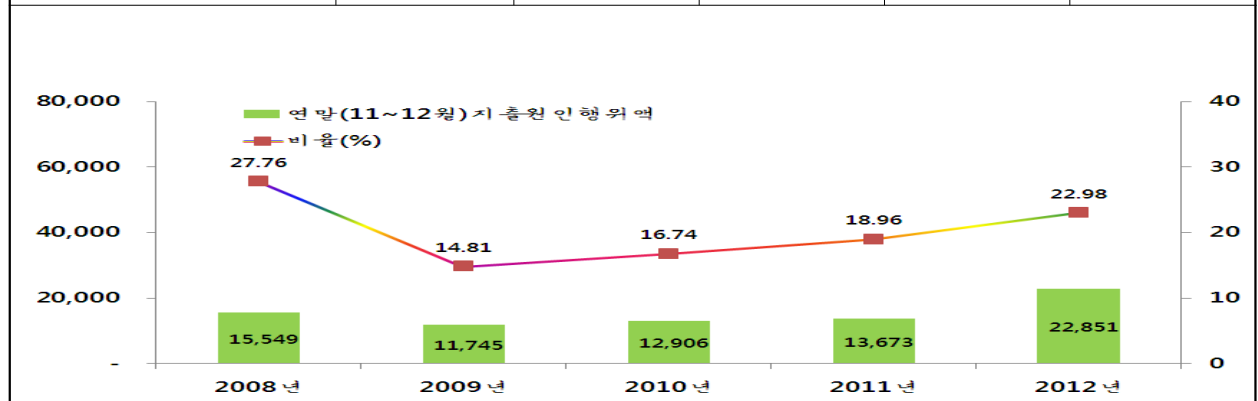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9,454	22,851	22.98%
시설비 (401-01)	98,107	22,027	22.45%
감리비 (401-02)	279	98	35.20%
시설부대비 (401-03)	207	55	26.4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861	671	77.8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56,004	79,318	77,120	72,121	99,454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549	11,745	12,906	13,673	22,851
비율 (%) (B/A)	27.76%	14.81%	16.74%	18.96%	22.98%



-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산천어축제를 대비하여 행사관련시설비가 연말에 집중 지출됨.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화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2,053	1,828	225
지방세	983	755	228
세외수입	1,070	1,073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각종 자동차관련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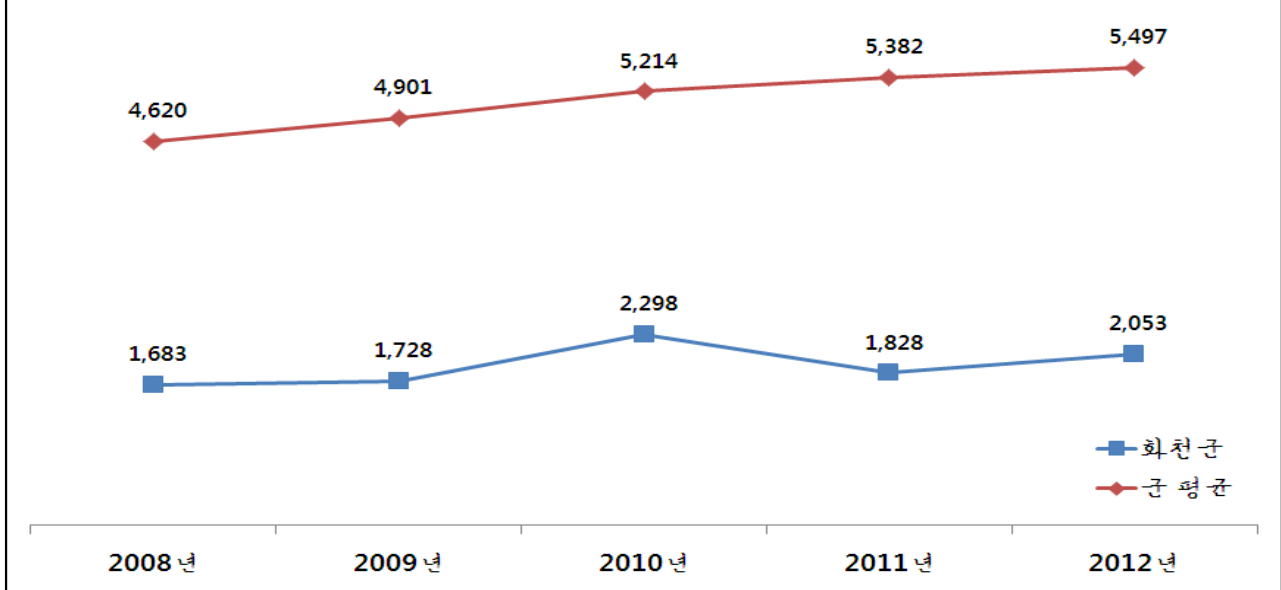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683	1,728	2,298	1,828	2,053
지방세	795	774	1,000	755	983
세외수입	888	954	1,298	1,073	1,070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 활보장 (081)	취약계 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23,187	7,410	2,789	4,396	7,440	0	0	212	940
국비	11,101	3,775	1,442	1,997	3,829	0	0	0	58
시·도비	2,179	853	205	695	365	0	0	0	61
시·군·구비	9,907	2,782	1,142	1,704	3,246	0	0	212	8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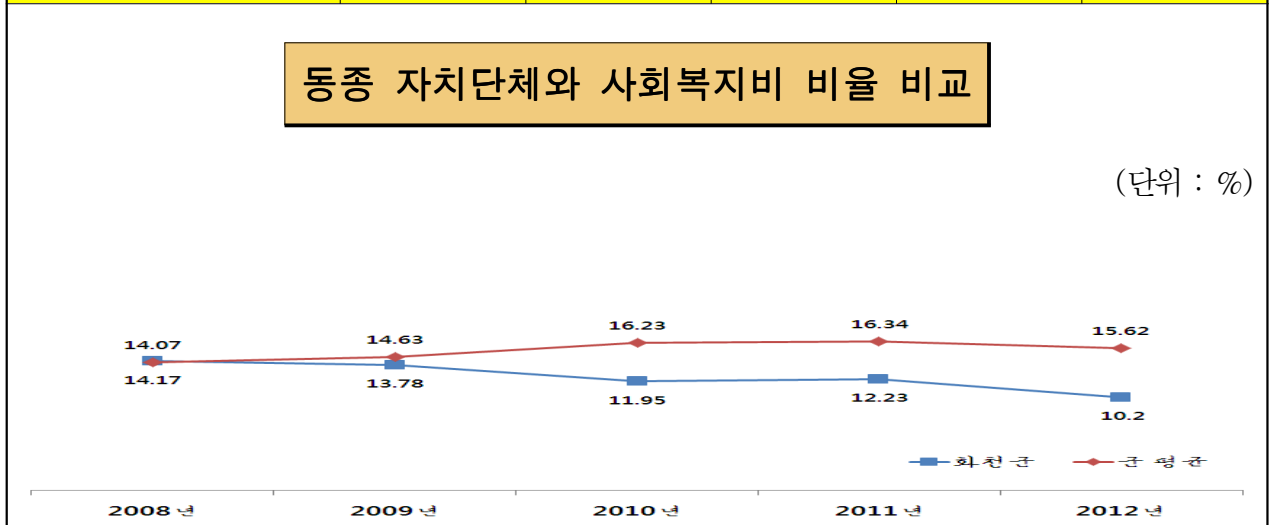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164,156	192,404	197,968	193,796	227,433
사회복지분야(B)	23,264	26,509	23,662	23,704	23,18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17	13.78	11.95	12.23	10.2
인구수(C)	24,110	24,216	24,364	24,945	25,02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1	1	1	1	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7-2. 민간단체보조금

☐ 다음은 화천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화천군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비 고
계	227,433	9,176	4.03%	
민간경상보조(307-02)	227,433	5,953	2.62%	
사회단체보조(307-03)		362	0.16%	
민간행사보조(307-04)		2,860	1.2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 ○○행사 운영비, ○○행사지원, 기타 등을 월별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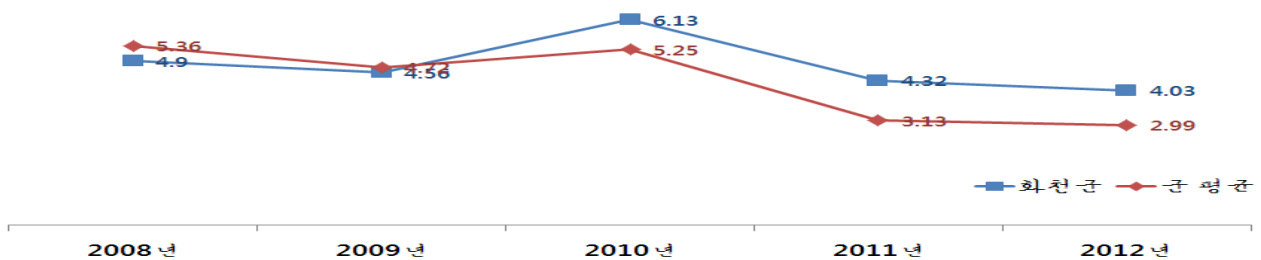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64,156	192,404	197,968	193,796	227,433
민간단체 보조금	8,074	8,778	12,131	8,368	9,176
비율(%)	4.90%	4.56%	6.13%	4.32%	4.03%

▶ '08 ~ '11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지참조)

(단위 : 천원)

월별	지원사업	보조금액	비 고
	총계		
1월	○○노인회 자연정화활동 지원		
	○○단체 장묘문화 개선 지원		
	○○기념 웅변대회 행사 지원		
	:	:	
	:	:	

- ▶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 ○○행사 운영비, ○○행사지원, 기타 등을 월별로 제공

7-3. 행사·축제경비

- ☐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2012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27,433	5,740	2.2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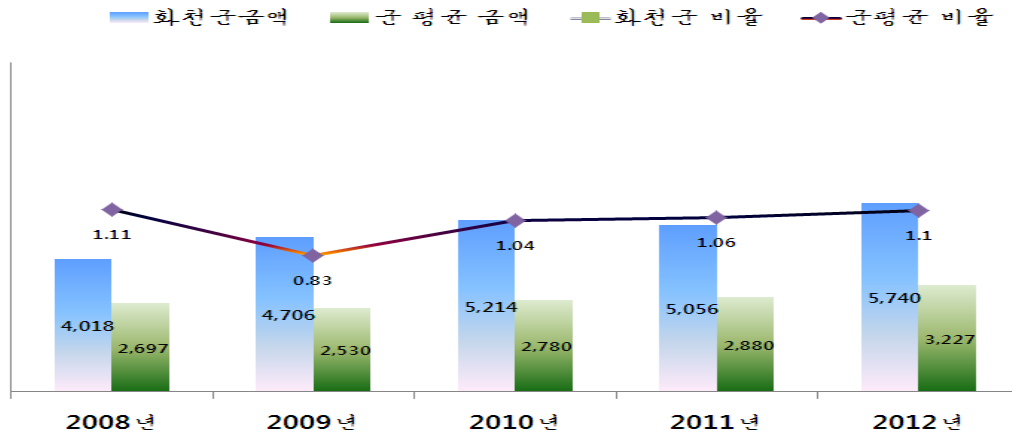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164,156	192,404	197,968	193,796	227,433
행사·축제경비	4,018	4,706	5,214	5,056	5,740
비율 (%)	2.40%	2.45%	2.63%	2.61%	2.52%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 '08 ~ '11년도 행사·축제경비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동절기 산천어 축제 및 하절기 쪽배축제로 인해 타 동종시군에 비해 행사 및 축제성경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 '12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참조)

(단위 : 천원)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 ○○행사 시설비, 대회운영, 행사지원, 기타 등을 월별로 정보 제공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화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7,142	224	2,164	1,940	17,366	
화천군체육진흥기금		538	4	16	12	542	
향토인재육성장학금		3,317	360	539	180	3,67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011	48	48	0	1,059	
노인복지기금		1,567	-1	67	67	1,567	
장애인복지기금		1,572	-2	67	69	1,570	
여성발전기금		1,584	-9	68	77	1,575	
식품진흥기금		19	4	7	4	22	
재난관리기금		544	-33	88	122	511	
농업경영기금		2,991	75	87	12	3,065	
농기계공급지원기금		2,210	58	121	63	2,268	
기초생활보장기금		1,162	46	46	0	1,208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금		628	-326	1,008	1,335	302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기금별 재원의 변동, 일몰기간 등 기술

❖ 연도별 기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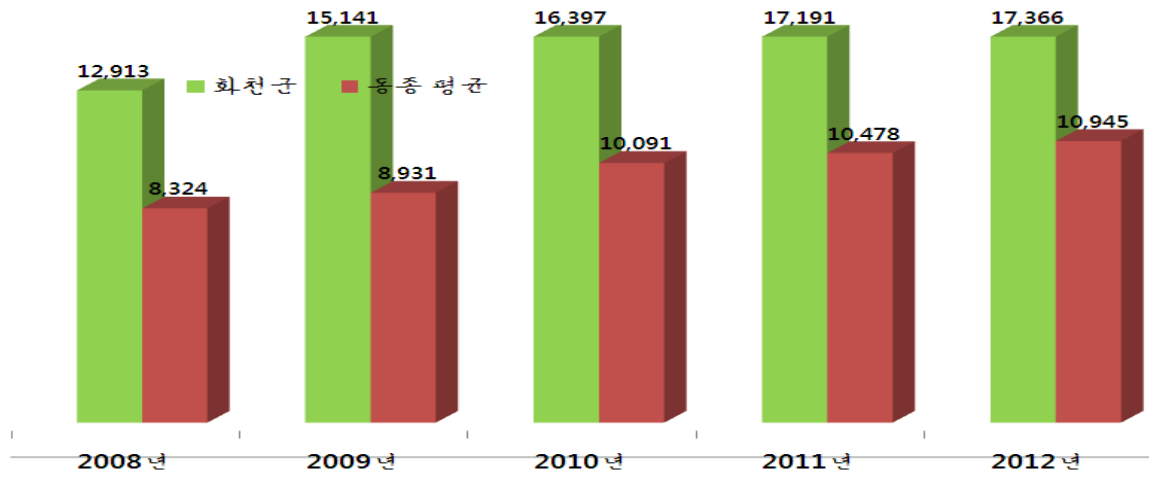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2,913	15,141	16,397	17,191	17,36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향토인재 육성기금등 화천군 자체설치기금의 운용하고자 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기금보유현황이 높음.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화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비교 직할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90.45	81.13		
공 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09	99.57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5.63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55.56	44.71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100	92.11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100	93.6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96.62	92.1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95.39	83.19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정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정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100	100	100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0	90.4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8.33	93.62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및 2012년 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64,206	520,321	85,125	82,379	986	14,789	1,348,345	587,911	
토지	9,241	93,320	1,612	20,194	971	11,543	9,882	101,971	
건물	297	82,341	67	24,786	15	3,246	349	103,881	
입목축	1,251,414	141,580	82,826	525	0	0	1,334,240	142,106	
공작물	2,278	194,326	616	36,837	0	0	2,894	231,163	
기계기구	610	6,909	0	0	0	0	610	6,909	
선박	7	1,273	1	34	0	0	8	1,307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23	405	3	2	0	0	226	407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36	166	0	0	0	0	136	166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28	3,520	93	1,957	12	114	309	5,363	
구 매	232	3,587	73	1,791	0	0	305	5,378	
관리전환	2	19	20	166	10	109	12	7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6	-86	0	0	2	5	-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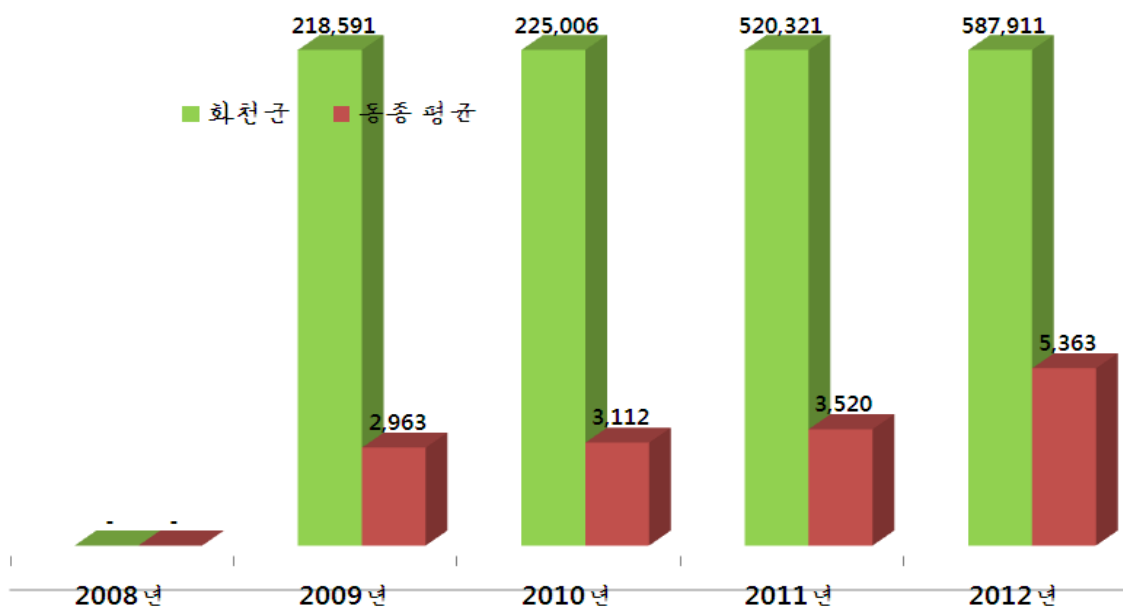
-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0	218,591	225,006	520,321	587,911
물 품	0	2,963	3,112	3,520	5,36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화천군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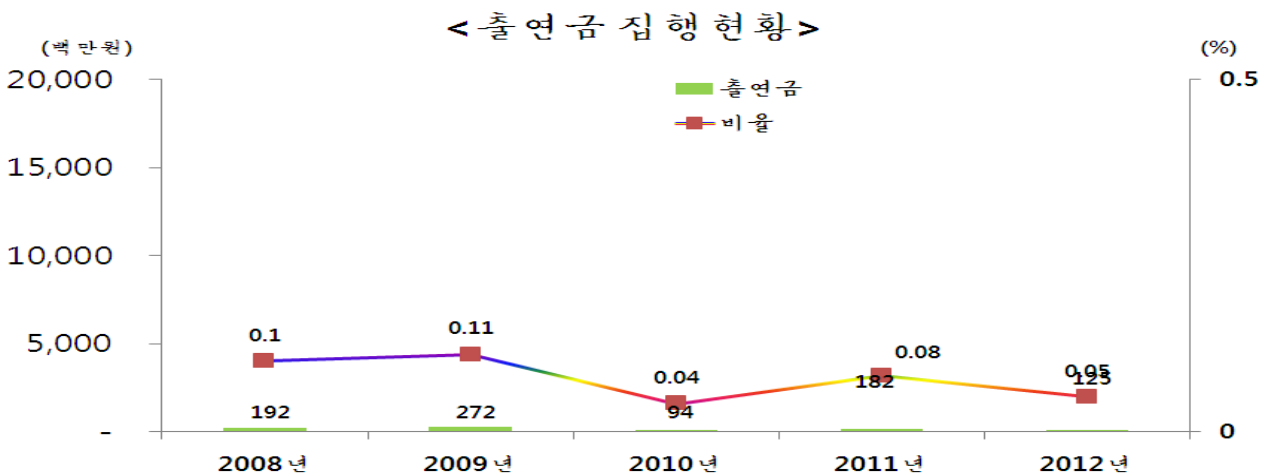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273,803	125	0.05%	0	0%	
일 반 회 계	227,433	125	0.05%	0	0%	
특 별 회 계	27,367	0	0%	0	0%	
기 금	19,004	0	0%	0	0%	

-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199,488	251,858	246,320	235,900	273,803
출연금(B)	192	272	94	182	125
비율(B/A)(%)	0.10%	0.11%	0.04%	0.08%	0.05%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0	0	0	0	0
비율(C/A)(%)	0%	0%	0%	0%	0%



-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연도별 증감,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별지참조)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출연·출자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4.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화천군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994,110	1,861,483	132,627	1,724,434
부채 총계	15,846	17,557	-1,711	31,596
비용 총계	151,683	146,153	5,530	229,138
수익 총계	235,798	218,663	17,135	321,825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사이트 명 기재)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I.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6%	1.84%	0.43%	
	2. 경상수지비율	64.46%	68.78%	67.05%	
	3. 지방채무잔액지수	5.75%	21.13%	36.47%	
	4. 지방채무상환비율	0.61%	3.06%	5.49%	
	5. 장래세대부담비율	0.86%	4.32%	7.92%	
	6. 자체세입비율	4.19%	29.28%	46.66%	
	6-1. 자체세입 증감률	-6.24%	6.90%	3.46%	
II.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 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94	1.0063	1.01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38	-0.2491	-0.16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784	1.0916	1.039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479	-0.0589	0.010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07	0.9970	0.9971
	세 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01	0.0094	-0.000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685	0.0849	0.037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634	0.1966	0.1781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015	0.0631	0.118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189	-0.0478	0.0994
III.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55%	104.21%	110.15%	
	18. 예산집행률	72.08%	86.72%	89.0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4.89%	41.87%	33.41%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95.49%	67.09%	70.81%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86.99%	65.87%	64.17%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및 내용 중 특이사항,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설명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 설명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표명	산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text{세입}-\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text{지방채무 잔액}/\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text{부채총계}/\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 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 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를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 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지방세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지방세 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text{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 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text{최종사업예산액} / \text{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times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text{세출결산액} / \text{예산현액} \times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출	$\text{투자지출액} / \text{정책사업비 결산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1년 회계기준 분석)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PDF, WebBook 등)

9-4. 지방세 지출예산

-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A)	2,619	2,733	2,853	2,911	3,225
비과세	2,436	2,550	2,672	2,657	2,599
감면	182	183	181	255	625
지방세 징수액(B)	8,200	7,782	7,623	7,743	7,287
비과세·감면율(A/A+B)	24.21%	25.99%	27.23%	27.32%	30.68%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구성비(%)	'11년도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A)		(B)			
총 계	2,619	100.00%	2,733	100.00%	△114	△4.18%
일반공공행정	570	21.76%	546	19.98%	24	4.35%
공공질서 및 안전	14	0.55%	17	0.61%	△2	△13.78%
교육	82	3.14%	81	2.96%	1	1.66%
문화 및 관광	37	1.42%	33	1.22%	4	10.8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89	3.38%	92	3.38%	△4	△4.17%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42	1.60%	38	1.41%	3	8.69%
산업·중소기업	0	0.02%	0	0.01%	0	39.57%
수송 및 교통	2	0.06%	2	0.09%	△1	△33.49%
국토 및 지역개발	6	0.24%	7	0.24%	0	△5.6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766	67.42%	1,904	69.67%	△138	△7.2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1	0.42%	12	0.42%	△1	△4.75%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19	2,436	179	3	0	
보 통 세	보통세소계	2,619	2,436	179	3	0
	취득세	0	0	0	0	0
	주민세	14	5	8	0	0
	재산세	2,491	2,411	77	2	0
	자동차세	114	20	93	1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 적 세	목적세소계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기 타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수시공시 반영-9월 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화천군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 우리 화천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 ▶ '12 ~ '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감사기관 링크)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 우리 화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 우리 화천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 ▶ 9월 수시공시에 반영

11-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화천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상서면 주민 자치센터 신축공사	24,000	1,000			1,400		1,000	38%

- ▶ 작성기준 : 2013. 6월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 작성요령은 투융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 예정액을 필히 기재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위치 : 156-1 4 1지
- 사업규모 : 2,311m² 건축면적(연면적) 1,150m²
- 사업기간 : 2013 3 ~ 2013 10 1
- 총사업비 : 2,400 1만원(군비1,400, 지방채1,000)

▣ 추진상황

- 편청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완료 : '13. 4. 22
- 관정개발공사 : '13. 4. 30
- 건축공사 : 38%(2013. 8. 28)

▣ 사업 내용 및 기대효과

- 사업내용 : 1 ~2 (), (,)
- 기대효과 :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11-3. 민간투자사업

☐ 우리 화천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BTO							

-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2년까지는 집행액(결산 기준), 2013년은 예산 반영액,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재정부담액이 큰 사업 위주로 재정부담이 큰 사유를 설명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 작성요령은 투융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제2절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기준

■ 분야별 항목선정 : 별지 참고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항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2~3배수 선정, 5건 이상 재정공시
- '12년 재정운영 결과에 한정하며, 미래의 계획 등은 제외 (재정운영 결과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함)
 -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유치사업의 국비·지방비 등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와 추진실적
 - ▶ 노인치매병원 유치, 실버타운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 결과 전년 대비 피해축소 등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 ▶ 재해위험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해관련 상습피해 지역 등
 - 지역 전략산업의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 ▶ BIO산업단지, 의료도시 활성화 등
 - 지역 특수 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재정 중점 지원 등 주민관심사항
 -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지역현안 사항 추진실적

■ 작성요령

- 특수공시 내용을 사업목적, 기간, 사업규모,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을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작성
- 도표, 그래프, 사진 등을 활용, 주민의 이해도 제고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2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0,948,272	북구	312,937	대전광역시	1,524,583
서울특별시	10,195,318	해운대구	428,188	동구	251,945
종로구	165,207	사하구	352,726	중구	264,125
중구	133,360	금정구	255,692	서구	496,513
용산구	243,232	강서구	65,806	유성구	306,312
성동구	299,604	연제구	211,536	대덕구	205,688
광진구	371,313	수영구	176,666	울산광역시	1,147,256
동대문구	363,258	사상구	250,424	중구	233,013
중랑구	419,295	기장군	114,566	남구	346,836
성북구	481,857	대구광역시	2,505,644	동구	175,479
강북구	343,157	중구	75,439	북구	184,088
도봉구	362,270	동구	342,092	울주군	207,840
노원구	597,189	서구	220,211	세종특별자치시	113,117
은평구	501,480	남구	168,715	경기도	12,093,299
서대문구	315,113	북구	448,485	수원시	1,120,258
마포구	384,644	수성구	459,779	성남시	978,615
양천구	495,911	달서구	606,557	의정부시	429,147
강서구	567,431	달성군	184,366	안양시	611,412
구로구	427,520	인천광역시	2,843,981	부천시	869,944
금천구	243,288	중구	98,648	광명시	355,560
영등포구	391,408	동구	76,720	평택시	434,305
동작구	405,491	남구	414,500	동두천시	97,175
관악구	523,029	연수구	292,589	안산시	715,108
서초구	435,044	남동구	503,597	고양시	969,916
강남구	564,197	부평구	559,047	과천시	71,068
송파구	673,115	계양구	342,202	구리시	192,341
강동구	487,905	서구	469,887	남양주시	599,539
부산광역시	3,538,484	강화군	66,752	오산시	200,291
중구	48,148	옹진군	20,039	시흥시	399,485
서구	120,828	광주광역시	1,469,216	군포시	286,841
동구	98,529	동구	105,580	의왕시	154,757
영도구	139,765	서구	316,545	하남시	146,269
부산진구	392,731	남구	218,313	용인시	915,959
동래구	278,767	북구	443,677	파주시	394,201
남구	291,175	광산구	385,101	이천시	204,917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1,608	영동군	50,663	부안군	58,869
김포시	287,432	진천군	63,458	전라남도	1,909,618
화성시	525,490	괴산군	37,713	목포시	245,073
광주시	275,656	음성군	92,980	여수시	292,217
양주시	200,310	단양군	31,253	순천시	273,798
포천시	157,559	증평군	34,279	나주시	88,067
여주군	109,550	충청남도	2,028,777	광양시	150,837
연천군	45,599	천안시	581,988	담양군	47,612
가평군	60,794	공주시	117,298	곡성군	30,878
양평군	102,193	보령시	105,559	구례군	27,077
강원도	1,538,630	아산시	280,490	고흥군	71,560
춘천시	273,364	서산시	163,315	보성군	47,050
원주시	323,885	논산시	126,653	화순군	68,378
강릉시	217,741	계룡시	41,550	장흥군	42,672
동해시	93,897	당진시	155,104	강진군	40,241
태백시	49,493	금산군	55,715	해남군	78,150
속초시	83,579	부여군	73,259	영암군	59,997
삼척시	72,463	서천군	58,920	무안군	75,741
홍천군	69,727	청양군	32,087	함평군	35,780
횡성군	44,615	홍성군	88,415	영광군	57,224
영월군	40,155	예산군	85,876	장성군	46,289
평창군	43,627	태안군	62,548	완도군	53,871
정선군	39,915	전라북도	1,873,341	진도군	33,208
철원군	47,968	전주시	648,863	신안군	43,898
화천군	25,020	군산시	278,341	경상북도	2,698,353
양구군	22,799	익산시	306,469	포항시	518,913
인제군	32,456	정읍시	119,392	경주시	264,091
고성군	30,124	남원시	87,000	김천시	135,504
양양군	27,802	김제시	92,317	안동시	168,302
충청북도	1,565,628	완주군	86,164	구미시	416,949
청주시	666,852	진안군	26,963	영주시	113,547
충주시	208,447	무주군	25,321	영천시	101,798
제천시	137,521	장수군	23,191	상주시	104,182
청원군	154,780	임실군	29,956	문경시	75,899
보은군	34,438	순창군	30,055	경산시	246,358
옥천군	53,244	고창군	60,440	군위군	24,119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의성군	57,043	울릉군	10,673	함안군	67,425
청송군	26,481	경상남도	3,319,314	창녕군	62,966
영양군	18,208	창원시	1,091,471	고성군	56,906
영덕군	40,257	진주시	337,314	남해군	48,223
청도군	43,968	통영시	139,347	하동군	50,806
고령군	35,343	사천시	115,321	산청군	35,691
성주군	45,127	김해시	513,260	함양군	40,714
칠곡군	119,786	밀양시	108,755	거창군	63,103
예천군	46,027	거제시	236,944	합천군	50,279
봉화군	33,934	양산시	270,460	제주특별자치도	583,713
울진군	51,844	의령군	30,329		

※ 본 인구통계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2.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2012년 기준)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 국	3,731	동래구	12	동구	8
서울특별시	533	남구	15	서구	13
본청	114	북구	13	남구	12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구	20
중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5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9
성동구	14	강서구	7	본청	26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구	12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7	유성구	10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50	대덕구	9
도봉구	14	본청	34	울산광역시	76
노원구	22	중구	7	본청	26
은평구	18	동구	16	중구	11
서대문구	15	서구	12	남구	14
마포구	18	남구	9	동구	8
양천구	18	북구	20	북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48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0	본청	131
동작구	17	본청	38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구	17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9	부천시	29
강동구	18	남동구	14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35	부평구	19	평택시	15
본청	53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구	7	서구	14	안산시	21
서구	9	강화군	7	고양시	30
동구	9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4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청	26	남양주시	14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군산시	24
시흥시	12	양양군	7	익산시	25
군포시	9	충청북도	165	정읍시	17
의왕시	7	본청	35	남원시	16
하남시	7	청주시	26	김제시	14
용인시	25	충주시	19	완주군	10
과주시	11	제천시	13	진안군	7
이천시	9	청원군	11	무주군	7
안성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김포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화성시	17	영동군	8	순창군	8
광주시	8	진천군	7	고창군	10
양주시	7	괴산군	8	부안군	10
포천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5
여주군	7	단양군	7	본청	62
연천군	7	증평군	7	목포시	22
가평군	7	충청남도	209	여주시	26
양평군	7	본청	42	순천시	24
강원도	216	천안시	21	나주시	14
본청	47	공주시	11	광양시	12
춘천시	21	보령시	12	담양군	9
원주시	22	아산시	14	곡성군	7
강릉시	18	서산시	13	구례군	7
동해시	8	논산시	12	고흥군	12
태백시	7	계룡시	7	보성군	9
속초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삼척시	8	금산군	8	장흥군	7
홍천군	8	부여군	11	강진군	8
횡성군	7	서천군	9	해남군	11
영월군	7	청양군	8	영암군	9
평창군	7	홍성군	10	무안군	7
정선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철원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화천군	7	전라북도	240	장성군	8
양구군	7	본청	43	완도군	9
인제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신안군	10	영양군	7	김해시	21
경상북도	347	영덕군	7	밀양시	12
본청	63	청도군	7	거제시	15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5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0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0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9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0
상주시	17	경상남도	318	산청군	9
문경시	10	본청	59	함양군	9
경산시	15	창원시	55	거창군	10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0
의성군	13	통영시	12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81
- 지방재정법, 시행령 83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의 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p> <p>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u>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p>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p> <p>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p> <p>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의 재무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 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p>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8.4]</p>	<p>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p>	<p>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p> <p>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p>	<p>4.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p> <p>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p> <p>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본조신설 2011.9.6]</p> <p>제65조의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p> <p>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p> <p>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p>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8]</p>	<p>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p> <p>제65조의4(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p>[본조신설 2011.9.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p> <p>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6></p> <p>②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1.9.6,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재정·세제·회계·공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p>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6></p> <p>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6,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5조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5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p>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제목개정 2011.9.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8.4]</p>	<p>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 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